

●법무부령 제1166호
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6년 10월 01일

법무부장관 인
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(지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관할 지방공소청장(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, 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, 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 제17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○○지방검찰청”을 “○○지방공소청”으로, “검찰처분”을 “검사처분”으로, “○○지방검찰청(○○지청) 검사”를 “○○지방공소청(○○지청) 검사”로, “○○지방검찰청검사장(○○지청장)”을 “○○지방공소청장(○○지청장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○○지방검찰청(○○지청)”을 “○○지방공소청(○○지청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,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되고,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·직무 범위·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「공소청법」이 제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10. 2. 시행)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.
<법무부 제공>